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0호 2019. 2. 12.(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41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하동군 조례 제2342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5
- 하동군 조례 제2343호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9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99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14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수) 24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4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6
- 하동군 공고 제2019-15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하동군 공고 제2019-17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41호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19-165호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상당) 채용계획 82
- 하동군 공고 제2019-172호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96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1 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연 도	월 정 수 당 지 급 액
의 원	2019년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2.6%)만큼 인상 ※ 2019년도 지급금액(연19,022,040원/월1,585,170원)
	2020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1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표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표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월정수당지급액	구분	연도	월정수당지급액
의원	월 1,545,000원	의원	2019년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2.6%)만큼 인상 ※ 2019년도 지급금액(연 19,022,040원/월1,585,170원)
			2020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1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2 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군수는 군의 사회공헌 진흥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섬김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베품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군수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군 소속기관(국·담당관·과·소, 읍·면을 포함한다)의 장
5. 군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해마다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

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주간) 군수는 해마다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 수여일부

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사전에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3 호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군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하동군 포상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99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를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 유 력					
보 유 장 비					
<p>「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남 / 여) (인)</p> <p>하 동 군 수 귀하</p>					
<p>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p>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3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공사명					
	사용 장소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기타		
	배출시설					
	배출량		일평균	m ³	월평균	m ³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하 동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신 청 내 용	점 용 장 소					
	점 용 기 간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공 사 내 용					
<p>「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남 / 여) (인) </p> <p style="margin-top: 20px;">하 동 군 수 귀하</p>						
<p>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p>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접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신청 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사 내용 (구 조)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p>「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남 / 여) (인)</p> <p>하 동 군 수 귀하</p>							
<p>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p>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동번		하수번호	하수량 점검 카드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용자		주 소 성 명		(남 / 여)										
구경	입대	m/m	하수종별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용자		(남 / 여)											
			1시간당 출수량	사용 기간		업종	사용량 1	업종	사용량 2	근거	감량	원수	가구 수	사용량	사용 인구	연건평	확 인				
월	일																				

(뒷 면)

공 지 사 항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가옥때때나 세입자 전출입시 체납금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하수도 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청 수도사업과(하수도담당) ☎ 880-2601 ~ 6으로 문의바랍니다.

검침신고

일 자	월 일
금일지침	
사 용 량	

명의 변경신고

주 소	
전소유자	
현소유자	(인)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사 용 자	하 수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p>「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남 / 여) (인)</p> <p>하 동 군 수 귀하</p>						
<p>첨부서류 1. 입증서류 1부</p>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신	하 동 군 수				
권리자의 성명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명 (남 / 여) (인)
 생 년 월 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하 동 군 수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남 / 여)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 -----.</p>
<p>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u>군수</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 ----- ----- ----- <u>하동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 -----.</p>
<p>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을 때는 공동 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14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6-1천		
성명(법인명)	하동군수		
법 인 번 호	614-83-00025		
하 천 명 칭	주교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6-1천		
점 용 면 적	257㎡		
최 초 허 가 일	2019년 2월 7일		
점 용 기 간	영구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처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4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산업단지 투자 촉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세부기준과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유치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4항, 제5항)

■ 입지보조금 차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역집중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30% 이하로 하되,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업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25% 이하로 하되,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자의 의무 경영 기간 설정 : 5년이상 경영

○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 포상금액 : 포상금 최대 2억(공무원 2천만원)

- 기여도에 따라 적용률 100% ~ 30% 차등 지원
- 세부기준 시행규칙 별표 1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2월 0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단조성과, 전화 055-880-2613, FAX 055-880-2619, e-mail ttakkom@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붙임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 유치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제1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집중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포상금 지급신청”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 1을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투자유치 포상 기준(제28조제4항 관련)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2(0.02%)		2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04(0.004%) + 200만원		36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03(0.003%) + 360만원		51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02(0.002%) + 510만원		2,000만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 적용율(③))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별지 제19호서식]

투자유치 성공포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투자유치 내 역	투자자명			국 적		
	기 업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 전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단 독	<input type="checkbox"/> 합 작 ()%			
	공장규모	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명(사업개시일 기준)				
	투자금액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신 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유치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집중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칙으
 로 정하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
 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
 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④ 포상금 지원기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경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

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
 른 포상금 지급신청--.
 ③ (현행과 같음)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 2를 따
 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기준」을 준용한다.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하동군 공고 제2019 - 15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안 이유 : 복무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3. 주요 내용
 -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 장기재직휴가 개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20일(개정)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신설)
 - 출산시 배우자의 휴가일수 확대 : 5일 ⇒ 10일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자녀 입영당일 1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35hero@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을 “개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군수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p> <p>1. 2. (생략)</p> <p>3. <u>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p> <p>4. (생략)</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u></p> <p>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③ <u>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u></p>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개인 ----- ----- ----- -----</p> <p>4. (현행과 같음)</p> <p><삭제></p>

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생략)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제9조(겸임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
-----.

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

<삭 제>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 ④ (생략)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질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삭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생략)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 18조제2항에 따른다. 단, 신청인은

<삭 제>

<삭 제>

<삭 제>

⑪ 군수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 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가 따로 정한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17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 지급기간 연장(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1호)
 - 나.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안 제2호제4호, 안 제3조제6항, 안 제4조제1항제3호)
 - 다.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내용 변경(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1호)
 - 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에 관한 규정(안 별표2)

마. 법제 해석의 혼돈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842, FAX 880-2159, suml200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출산용품 구입비”를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같은 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

제4조제2항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제1호, 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가목중 “기준으로”를 “전,”으로 하고, 같은 표제1호 지원대상나목중 “둘째아이 이상 분할지원”을 “분할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지원내용중 “셋째아이 600만원”을 “셋째아이 1,000만원”으로, “넷째아이 1,000만원”을 “넷째아이 1,500만원”으로, “1년·2년·5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각각 4년·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개정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적용한다.)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를 “1년·2년·9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 아이는 첫회 150만원 지급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개정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으로 한다.

별표 1제2호 “출산용품 구입비”를 “출산축하용품”으로, 지원내용중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을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별표 1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가목중 “부모와 자녀 모두가”를 각각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로 한다.

별표 2제5호 지원대상중 “ ‘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정과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신설 2019.00.00>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p>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p> <p>-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p> <p>-여자의 경우 가임기(만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p>	<p>-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p> <p>(단, 첫째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p>

별표 4 시책명의 “출산용품 구입비”를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분할지원 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1,000만원 ·넷째아이 1,5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1년2년9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첫 회 150만원 지급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개정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 ·2인 : 30만원,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4인 이상 : 7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군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휴가비 :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팸투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9.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0. 농지 및 축사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1.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반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2.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 3] <신설 2019.00.00.>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별표 4]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둥이 안전보험	행 정 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 정 과	
	출산장려금	행 정 과	
	출산축하용품	행 정 과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행 정 과	
	임산부 철분제	보 건 소	
	임산부 양수 검사비	보 건 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체육과	
	전입세대 팸투어	문화체육과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체육과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행 정 과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 정 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 정 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영농정착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농업기술센터	
	특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 정 과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신 분 첨 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계 번 좌 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 산 장 려 지 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 <input type="checkbox"/> 넷째 <input type="checkbox"/> 다섯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 입 지 원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결 혼 장 려 지 원	※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 (뒷면)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 3.(생략) <신 설></p>	<p>제2조(정의) 1. ~ 3.(현행과 같음)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① ~ ⑤(생략) <신 설></p>	<p>제3조(지원대상)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결혼장려 지원대상은 별표 3과 같다</p>
<p>제4조(지원내용) ①(생략) 1. ----- <u>출산용품 구입비</u> ----- ----- - 2.(생략) <신 설> 3.(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세부 지원내용은 <u>별표 1 및 별표 2</u>와 같다.</p>	<p>제4조(지원내용) ①(현행과 같음) 1. ----- 출산축하용품 ----- ----- - 2.(현행과 같음) 3. 결혼장려 지원사항 : 결혼장려금 4.(현행 3.과 같음) ② -----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p>
<p>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생략) 1.~ 4.(생략) ② 인구증대시책 업무의 소관부서는 <u>별표 3</u>과 같다(다른조례개정 2018.8.3.></p>	<p>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② ----- -- -- 별표 4-----</p>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u>둘째아이 이상 분할 지원</u> 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u>600만원</u> ·넷째아이 <u>1,000만원</u>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u>1년2년5년간 분할 지급</u> 하고, 넷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각각 <u>4년·9년간 분할하여 지급</u> 하며, 지급 시기는 <u>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u> 하며, <u>개정 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적용한다.</u>)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2. 출산용품구입비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u>하동사랑상품권</u>
(생략)		
6. 다둥이 안전보협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모와 자녀 모두가</u>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모와 자녀 모두가</u>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u>분할지원</u> 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u>1,000만원</u> ·넷째아이 <u>1,500만원</u>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u>1년2년9년간 분할 지급</u> 하고, 넷째아이는 첫회 15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u>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u> 하며, <u>개정 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u>)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u>출산축하용품</u>
(현행과 같음)		
6. 다둥이 안전보협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u>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u>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u>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략)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개정)2017.5.19. 조례 제2220호
(생략)		

[별표 3]

<신 설>

[별표 4]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자녀를 둔 사람.

[별표 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현행과 같음)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관련)

세부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별표 4]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생 략)		
	출산용품 구입비	행정과	
	(생 략)		
(생 략)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5.1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 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전입 가족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 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현행과 같음)		
	출산축하용품	행정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결혼장려지원	결혼장려금	행정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5.1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 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전입 가족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 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 장려 지원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 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신 설>

세 부 신 청 사 항				
결혼장려지	대상자의 성명(夫)		생년월일	
	대상자의 성명(婦)		생년월일	
	혼인일자		전입일자 (다문화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일자)	대상자(남편): 대상자(처):
	<다문화가정인 경우, 확인사항> -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사업 수혜 여부 ※ 접수일 면에서 소관 부서에 직접 확인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년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없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141호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30.

하 동 군 수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1일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 103백만원, 16대(자동차 8, 건설기계 8)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 부착 문의 및 신청
 -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지원조건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협의 후 계약 체결 및 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
- 장치를 부착한 후 폐차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 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p-DP F	소 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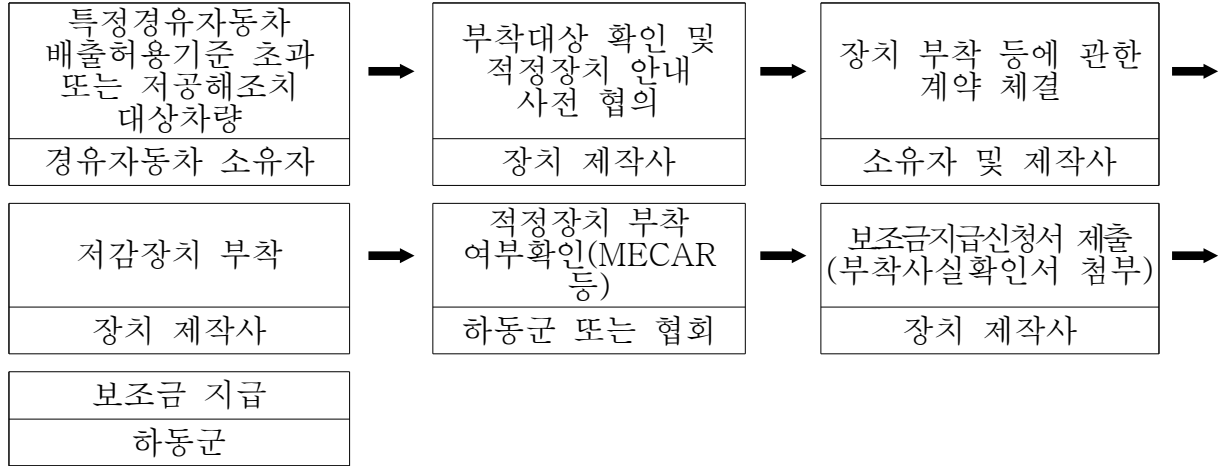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577	9,520	1,057	462
중형	7,778	7,001	777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기타문의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055-880-2564)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

- HK-MnS (☎ 070-4267-2728)
- (주)세라컴 (☎ 070-4333-7984)
- 일진복합소재(주) (☎ 031-220-0882)
- (주)이엔드디 (☎02-2029-7033)
- (주)에코닉스 (☎031-940-2560)
- (주)크린어스 (☎031-627-2900)

[붙임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차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¹⁾ 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²⁾ 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I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³⁾ 장치구분 (인증번호)	()	⁴⁾ 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 ~ 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 ~ 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3]

위 임 장	
건설기계 의 표 시	등 록 번 호 :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인천광역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건설기계 소유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엔진교체사업자) ① 주소 : 엔진교체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인천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건설기계 관리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①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인천광역시 등),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중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65 호

2019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지리산 생태과학관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환경보호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전문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생태과학관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 -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과학관 자료의 제작·배포 및 다른 과학관과 공동연구등 협력 - 기타 과학관 운영·인력운영관리 관련 업무 - 입장권 및 세외수익 징수 -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축제 추진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필수)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전문요원	지방행정 서기 (일반임기제)	1.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식물생태, 동물생태 관련분야)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산림자원학, 산림환경자원학, 생물학, 동물생명과학, 식물생명과학, 원예학, 원예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지질환경과학
		우 대 조 건
		1.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 식물생태, 동물생태 관련분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식물생태, 동물생태 (5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2,760천 원	37,635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2. 1(금)	'19. 2. 1 ~ '19. 2. 11	서류전형	-	'19. 2. 13
		면접시험	'19. 2. 15	'19. 2. 18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2. 1 ~ 2. 11 / 10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환경보호과(☎ 055-880-2578)

- ※ 별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㉞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사 진 ㉞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㉞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2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해면부 호안 보수 및 매립 공사 추진 경력)				
경 력	근무기관	재직기간	공사명(주요 추진 사항)	직위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검정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발급자		
기관명: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대표자: ①				소속		
				직 위		
				성 명	①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p>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 <u>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u></p>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방호직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9.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하동군 공고 제 2019 - 172호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위원 선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하 동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 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	이정운	2019. 1. 16.	450명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제출
 -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성명 등 인적사항 등 포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35hero@korea.kr) 중 택일
- 제 출 처 : 하동군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Fax. 055-880-2159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055-880-2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